

유럽 주요 공여국 농업 ODA 체계 *

강 하 니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전문연구원)

남 종 민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연구원)

1. 서론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혹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분야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실로 크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산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최근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ODA의 주요대상인 개발도상국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ODA 분야에서 농업이 가지는 의미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부부처 및 기관이 ODA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ODA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조명 및 확대 추세에 따라 농업 ODA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농업분야 ODA수행 주체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 (haneekang@redi.re.kr 070-4496-0092, min@redi.re.kr 070-4496-0098).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국제협력단 주도로 국제농업협력파트너십포럼(Forum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Partnership, FIAP)이 출범하여, 향후 농업 ODA 분야 민·관·학·연 네트워크로 농업분야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정부 및 학계의 파트너십 강화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농업 ODA의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유럽 국가들 중 오랜 원조역사와 다양한 경험을 지닌 영국, 독일, 프랑스의 농업 ODA 추진 체계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농업 ODA에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영국

2.1. 농업 ODA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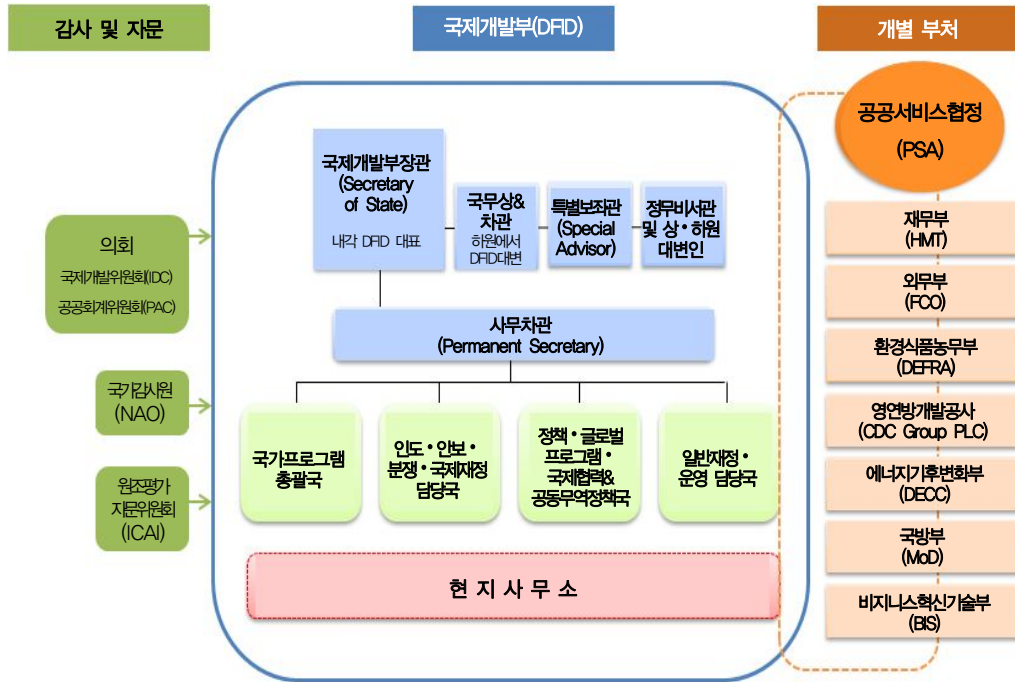
2.1.1. 영국 국제개발협력 체계

영국 ODA의 시작은 식민지 국가 지원을 통해 영국의 산업과 무역을 촉진하고자 1929년 제정된 식민지개발법(Colonial Development Ac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식민지 국가들이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식민지개발과 복지법(Colonial Development and Welfare Act)이 마련되고, 1945년 식민지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각 국별 10년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영국 ODA에서 최초로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영국 ODA는 식민지 개발에서 시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공여국 중에서 가장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후 영국정부는 1964년 해외개발부(Ministry of Overseas Development)를 첫 개발원조 담당 독립기관으로 설립하여 외무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개발협력이 기타 외교적 사안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1997년에는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를 신설하고, DFID의 역할을 법제화하여 타 부처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부처 간 개발협력 관련 협의에 있어 DFID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때 영국의 산업과 무역 증진이 아닌 지구촌 빈곤퇴치를 영국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림 1 영국 개발협력 체계도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13a.

DFID는 현재까지도 영국 ODA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개발협력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대한 부분은 각 수원국에 설치된 현지 사무소가 수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지 사무소에 대한 강력한 분권화 또한 DFID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DFID외에 재무부, 외무부, 환경식품농무부, 영연방개발공사, 에너지기후변화부, 국방부, 비즈니스혁신기술부 등 14개 부처에서도 ODA를 수행하나, 원조관련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의 담보를 위한 공공서비스협정(PSA)을 통해 DFID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원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3년 단위로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PSA라는 범정부적 목표를 설정하여, 부처 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부처는 PSA 내에서 구체적인 목표의 달성을 담당한다.

표 1 DFID의 공공서비스협정(PSA) 29조를 위한 각 부처별 역할

부 처	역 할
재무부 (HMT)	공여국의 재무장관들의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 유지를 위해 DFID와 협력 파리클럽, 국제통화기금, 지역개발은행의 책임감 있는 차관, 지속가능한 채무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DFID와 협력 저소득 국가의 국제금융기구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지원
외무부 (FCO) 환경식품농무부 (DEFRA) 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수원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영국의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정치적 맥락 분석으로 정책/집행 강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애드보커시 국제 천연자원 관리 문제 및 효과적인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역량개발을 위해 DFID와 협력 국제 기후변화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통해 DFID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정책을 보완
국방부 (MoD)	초기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분쟁지역의 개발과 관련해 부처 간의 협력을 지원하며 분쟁 예방 및 해결, 평화유지와 인도적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국방 외교, 보안 협력과 같은 개발전략 이슈와 영국이 직면하는 위협과 도전에 대한 국방부의 통찰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해 DFID와 협력
비즈니스혁신기술부 (BIS)	DFID와 함께 무역정책에 대해 공동 책임을 갖고, 개발도상국과 영국을 위해 공정한 세계 시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

자료: 영국 OECD/DAC Peer Review 2010 내용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13a에서 재인용.

2.1.2. 농업 ODA 추진체계 및 주요 행위자

대부분의 선진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정부 또한 원조전담기관인 DFID가 전반적으로 ODA를 총괄하되,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의 자체 농업·농촌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농업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동연구나 기술협력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조전담기관의 농업 ODA가 농촌종합개발 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DEFRA의 ODA는 산업 측면에서의 농업발전, 기술협력 측면에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농업기술 전파 등에 집중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영국의 DEFRA는 DEFRA의 부처차원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농업의 국제적인 측면에서 DFID와 협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FID와 DEFRA는 PSA를 통해 정책수준의 조율을 수행하고, 장관급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기본적인 조율작업을 수행한다. 글로벌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국제 식량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적 협력 기본문서)이 조율의 근거로 기능한다. 근본적으로 DEFRA의 경우 환경(기후변화, 산림) 부분에 대해서만 ODA에 관여하므로, DFID와의 역할분담에 있어 중대한 중복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2. 농업 ODA 연왕

2.2.1. 영국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연왕

2005년 발표된 DFID의 농업 ODA 기본 정책문서(DFID's Agriculture Policy,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The Role of Agriculture)는 농업을 빈곤퇴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영국 농업 ODA의 핵심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수원국 개발 현황에 부합하는 농업개발정책 수립, 두 번째 높은 농업생산성 증대 및 산업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도모, 세 번째 농업 생산 및 고용 창출 장애요소 극복, 네 번째 수요자 중심적 접근과 시장 기회에 집중, 다섯 번째 농업 ODA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지원, 여섯 번째 농업개발정책의 지속가능성 강조 등이다.

이후 2009년 발표된 DFID 백서(Eliminating World Poverty, Building our Common Future) 중 DFID 농업분야 비전에 따르면, 첫째 향후 20년 동안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Production) 2배 증가, 둘째 향후 20년 동안 남아시아 농업성장률(Growth) 2배 증가, 셋째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 등을 DFID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FID에서는 농촌개발보다는 농업생산성 확대에 초점을 두어, 농업연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DFID는 연구 전략문서(DFID's Research Strategy 2008~2013)를 통해 농업연구의 기본적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후변화, 보건과 연계, 거버넌스 이슈, 미래 도전과 기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농업 ODA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양자원조 총액 88억 달러 가운데 농업분야는 1.7억 달러로 2%를 차지하여 여타 선진원조공여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09~2011년 사이 영국 농업 ODA 수원지역은 아시아(5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23%)에 집중되어 있다. 농업분야 수원국 1위는 방글라데시(7,840만 달러), 2위는 인도(4,300달러), 3위는 아프가니스탄(2,670달러)이다.

2.2.2. 농업분야 ODA 주요 사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농업 ODA는 원조 독립부처인 DFID에서 전담하되, DEFRA는 농업보다는 환경에 관련된 기금 지원을 위주로 ODA를 시행 중이다. 특히 DEFRA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림분야 특화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PSA 29조와 관련한 DEFRA의 역할은 국제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통해 DFID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다.

DFID의 경우, 전통적인 형태의 농업/농촌개발 사업 보다는, 생산성 증대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연구 및 적용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농업연구 분야 국제적 연구 기관(예: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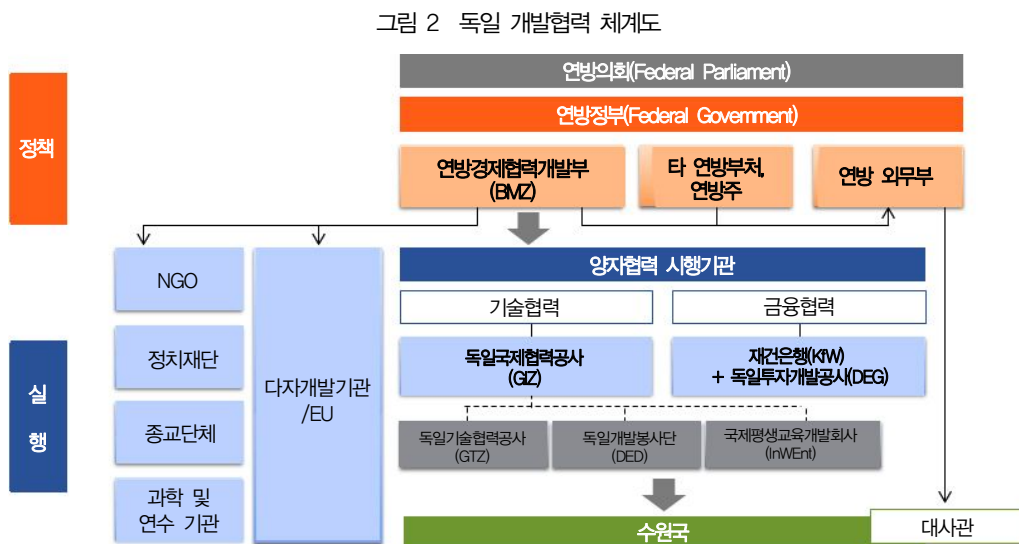
최근 영국 농업 ODA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글로벌 식량 및 농업 미래 프로젝트(UK Foresight Global Food and Farming Future Project)가 있다. 영국 정부 싱크탱크 Foresight와 DFID, DEFRA의 공동지원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DFID와 DEFRA가 공동으로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명시한 활동보고서를 보유하고 있다.¹⁾

3. 독일

3.1. 농업 ODA 추진체계

3.1.1. 독일 국제개발협력 체계

독일(당시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對)유럽 원조정책인 마셜플랜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이를 기반으로 국가재건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1952년부터 대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b

1) DFID는 G20 업무,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협력, 국제공공정책 강화, 농업연구개발, 농업개발사업 등 담당. DEFRA는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대응, 나고야 의정서 대응, EU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 등 담당.

(對)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60년 이상 매우 적극적인 공여국의 입지를 굳혀왔으며, 2013년 기준 독일의 원조규모는 약 140억 달러로 원조 규모의 측면에서 미국과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 3위의 공여국 위치에 있다.

독일은 다원적 원조체제를 가진 국가로서,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독일 원조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연방경제협력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BMZ²⁾)를 중심으로 40여개의 정부부처, 연방주, 기관 및 단체 등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책 수립기관과 집행기관이 구별되어 BMZ가 전반적인 원조정책의 원칙 및 전략을 수립하면 BMZ 산하기관인 국제협력공사(German Socie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IZ³⁾)와 재건은행(Reconstruction Credit Institute, KfW⁴⁾)을 비롯하여 기타 정부부처와 연방정부가 ODA를 집행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최고위급(장관급) 부처로 1961년에 설립된 BMZ는 개발협력 원칙 및 전략 수립, 독일정부의 개발정책 및 일관성 제고 전담,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계획, 부산파트너십 등 원조 및 개발효과성 의제의 이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독일 ODA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 원조집행기관으로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GIZ와 자금협력을 담당하는 KfW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BMZ 외에 외무부(AA), 환경부(BMU), 교육연구부(BMBF), 보건부(BMG),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경제기술부(BMWi) 등의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연방주 및 기타 기관 등 40여개 안팎의 정부 내 조직이 원조집행에 참여하고 있다. 2010년 정부부처 및 기관별 ODA 예산을 살펴보면⁵⁾ BMZ 외에 재무부(13.6%, EU 지원), 외무부(8.7%), 그리고 연방주(7.3%)의 ODA 비중이 큰 편이다. 반면, 기타 정부부처와 기관들의 ODA 예산을 합친 액수의 비중은 4%내외로 원조집행에 다양한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개별 부처 및 기관의 예산 비중은 적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의 다원화된 원조집행체계는 해외공관 및 BMZ 사무소간 대표성 논란, 의견 충돌, 중복된 행정절차 비용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원조 분절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기술협력 및 ODA 투명성에 대한 부처 간 조정그룹(Inter-ministerial Steering Group on Technical Cooperation and ODA Transparency)이 설치되어 ODA에 대한 부처 간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독일어).

3)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독일어).

4)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독일어).

5) BMZ에서 2013년에 발간한 The German Government's 14th Development Policy Report 참조.

3.1.2. 농업 ODA 추진체계 및 주요 행위자

독일의 농업 ODA는 주로 BMZ와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Federal Ministry for Food and Agriculture, BMELV⁶⁾)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원조의 집행은 각 부처 산하기관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이행된다.

BMZ는 농업 ODA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2013년에는 지속가능한 농업정책(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독일의 농업분야 개발정책을 제시하여 농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BMZ의 농업 ODA 전략에 따라 GIZ 또는 KfW 등은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과 관련된 농업 ODA를 수행하고 있다.

BMELV는 양자협력을 통해 파트너 국가의 식품, 농업, 소비자보호 부분에 대한 원조를 제공해 왔다. BMELV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GFA 컨설팅 그룹에 양자협력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탁하고 GFA가 프로젝트 기획과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MELV는 양자협력 외에 다자협력에도 참여하여 신탁기금의 형태로 세계농업기구(FAO)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70개 프로젝트에 9,200만 유로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3.2. 농업 ODA 현황

3.2.1. 독일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현황

독일의 농업분야 ODA는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농촌 내 빈곤, 기아 및 저개발의 근본원인을 고려하여 1)소규모 농가들의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 용이, 2) 공정하고 안전한 토지분배 지원, 3) 농촌지도와 소액대출 등을 통한 소규모 농가 지원 4) 농민들의 시장접근성 향상 지원 5) 빈곤층 교육과 정치참여 접근성 개선 등을 핵심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농업분야 개발협력 기초 아래 BMZ는 2013년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을 발표하고 향후 독일 농업분야 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천명하였다. <표 2>와 같이 동 전략은 빈곤감소와 식량안보를 첫 번째 전략목표로, 자원보존과 기후중립을 두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가지 원칙(Guiding Principles)과 6가지 행동범위(Area of Action)를 제시하고 있다.

6)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독일어).

표 2 농업분야 개발협력 정책 주요사항

목표	빈곤감소와 식량안보	자원보존과 기후중립
목표범위 (Target area)	▶ 지속적인 농업강화 ▶ 식품 가공 및 정제 ▶ 다양화(Diversification) ▶ 시장 개방 및 무역통합 ▶ 수확 후(가치사슬) 체계	▶ 토양보존 ▶ 수자원관리 ▶ 삼림보호 ▶ 다양성 보존 ▶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 기후변화 적응
원칙 (Guiding Principles)	1. 식량에 대한 권리 실현 2. 조화(Alignment) 3. 토지수탈 금지 4. 책임감 있는 에너지 작물 재배 5. 소작농 개발 우선순위 6. 양성평등 촉진 및 소외계층 통합 7. 종합적인 농촌개발 전략으로 수렴	
행동범위 (Areas of actions)	1. 농업 정책 자문 및 제도 구축 2. 소작농 전문성 강화 3. 농업 연수 및 컨설팅 4. 농업 자금 지원 5. 자원 관리, 환경보호 및 관개농업 6. 현지 및 국제기업과의 협력	

자료: Dirk Niebel et al(2013).

독일의 양자 농업 ODA 금액은 6.2억 달러로 전체 독일 ODA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OECD/DAC 회원국 농업분야 ODA의 10%를 차지하여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금이다. 독일의 양자 농업ODA는 2007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별 양자 농업 ODA 현황을 살펴보면, 농촌 개발(34%), 농업용 수자원(15%)과 농업개발(1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조 형태로 보았을 때 수자원 지원에 대한 차관비율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양자 농업 ODA의 특징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양자 농업 ODA의 주요 수원국은 인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중국, 케냐이다.

독일은 농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국제개발은행 및 다자간 기구도 지원하고 있다. 독일 농업 다자원조의 규모는 2011년 총 5.7억 달러로 전체 농업 원조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원기관은 EU(2.6억 달러), 세계은행의 산하의 국제개발협회(2.3억 달러)이다.

3.2.2. 농업분야 ODA 주요 사업

BMZ는 독일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에 따라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식량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기아 감소를 위한 지원, 개발도상국의 세계 시장 접근을 위한 EU 농업 보조금 철폐 지원,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CGIAR)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농업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해, 재난으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외무부가 인도적 원조 활동을 조율하여 즉각적인 식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개발 측면에서는 6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 핵심 분야에 대한 주요 사업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BMZ 농촌개발 분야 핵심 분야 및 주요 사업

핵심 분야	주요 사업
경제촉진	중소기업육성, 농촌 금융시스템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교육지원 등
지방분권 지원	정부 및 지방행정 조직 지원, 농촌주민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
토지 및 농업개혁 촉진	파트너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토지개혁 지원, 토지시스템 개발, 소액금융 지원 등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UN 사막화 방지협약 이행 지원, 토지자원 관리 지원, 지속가능한 물 사용 촉진 지원 등
양성평등의식 함양	성별 역할 개선, 여성 참여 확장 등
개발지향적인 약물(Drug) 정책	코카인 또는 양귀비가 아닌 카카오, 커피, 팜유, 등 합법적인 작물 재배 지원 등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13b.

이상의 농업 ODA 체계에서 설명하였듯이 BMELV는 GFA 컨설팅에 양자협력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원조를 집행하고 있다.

BMELV의 양자협력 프로그램은 정치·경제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주로 개발도상국의 대(對) 정부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는 농식품 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 지원, 조합, 농업자문회사, 연수기관 등 농식품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큰 기관 설립 및 개선 지원 등이 있다.

4. 프랑스

4.1. 농업 ODA 추진체계

4.1.1. 프랑스 국제개발협력 체계

프랑스의 초기 국제개발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식민지와의 관계 유지 및 영향력 확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프랑스는 자국의 구식민지 국가, 특히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편중하여 원조를 수행하였으며 협력국의 경제 개발과 정치적 안정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전략적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프랑스 ODA의 기조는 1964년 잔네네 보고서(Jeanneney Report), 1971년 고스 보고서(Gorse Reprints), 1990년 헤셀 보고서(Hessel Report) 등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1990년대까지 구식민지 중심의 원조 정책은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서 MDGs, 원조효과성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프랑스도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원조환경 및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의 개발협력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기관과 시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원조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여하는 분절화된 형태이다. 대통령, 총리, 개발담당 장관,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MAD⁷⁾), 경제재무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⁸⁾)가 공동으로 개발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처 간 조율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정부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le développement, CICID)가 총리 직속 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다.

<그림 3>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밖에 다양한 정부부처가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나, 행정상으로는 MAD의 세계화·개발협력 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mondialisation, du développement et des partenariats, DGM)과 MEF의 재무총국(Direction Général Trésor, DGT)이 주도적으로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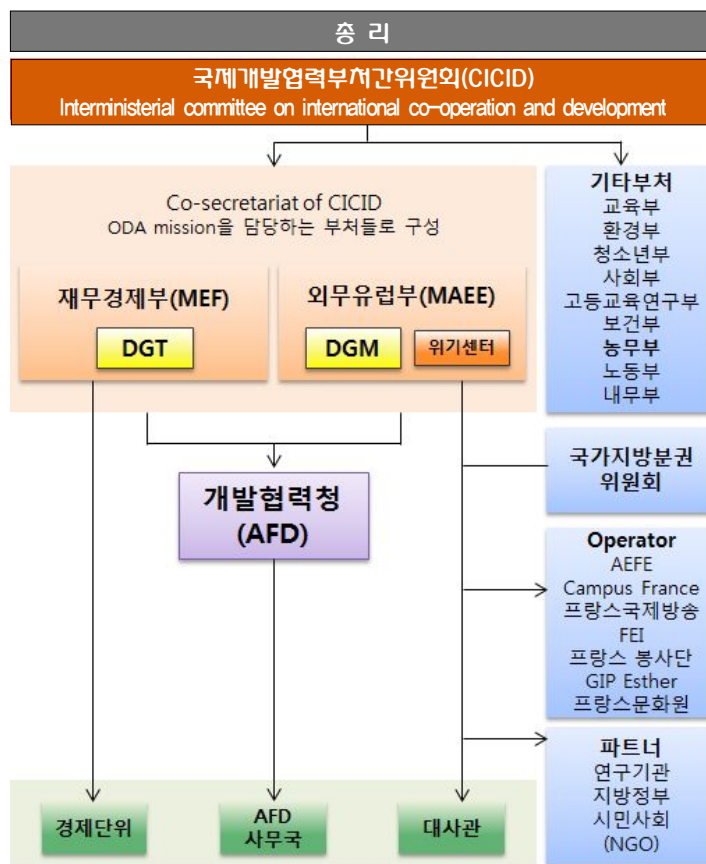
MAD는 프랑스 외교 및 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부부처이다. 특히 2012년 대통령에 의해 MAD내에 개발협력을 전담하는 개발전담장관(Minister Delegate for Development)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최고위급(장관급)이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있어 공적행위자간의 협력 및 조율을 전담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또한 MAD는

7)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프랑스어).

8)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프랑스어).

개발협력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ODA 집행에도 참여하여, 2011년 기준으로 프랑스 양자 ODA 중 12.4%를 집행하였으며, 다자기구(Global Fund, GAVI, UNICEF, UNFPA, WHO)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MAF는 국제금융기관, 대(對) 개도국 간 무역정책, 부채관리(탕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은행 및 국제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양자원조의 약 16.1%를 집행하였으며, 이 중 61%가 부채탕감이었다.

그림 3 프랑스 개발협력 체계도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13c.

주요 원조 집행 기관으로 MAEE와 MAF 아래 프랑스 개발협력청(French Development Agency, 이하 AFD)이 있다. 1941년 설립된 AFD는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동

시에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개발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90여 개국에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프랑스 양자 ODA의 42.5%를 집행하였다.

그 외 교육부, 환경부, 농무부, 청소년부 등 정부부처와 프랑스 봉사단, 프랑스 문화원 등 기타 정부 기관들이 원조 집행에 참여하고 있으나, MAD, MEF, AFD에 비해 직접적인 원조 집행 금액은 적은 편이며 부처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자 한계로 여겨지고 있다.

프랑스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조율과 협력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부처 간 조율과 협력을 위해 1998년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CICID를 총리 산하에 설치하였다. CICID의 사무국은 MAD와 MEF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정책의 우선순위, 방향, 목표, 중점지원지역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적인 회의가 없었으며, 주로 MAD와 MEF에 의해 전략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4.1.2. 농업 ODA 추진체계 및 주요 행위자

MAD는 MDGs 1 달성을 위해 농업부분 원조의 다섯 가지 핵심 지원 분야를 선정하는 등 농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립된 전략은 CICID를 통해 부처 간 조율과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수립된 전략에 따라 프랑스의 농업 ODA는 AFD와 농업식품산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gro-Food, and Forestry, 이하 MAAF⁹⁾)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AFD는 개발도상국 내 기술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농업·농촌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협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AFD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촌개발에 14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하였으며 AFD의 세 가지 농촌분야 개발협력 전략(농업 정책 개선, 농촌지역의 공평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농촌지역의 개발 및 균형적 경영 촉진)에 따라 원조를 집행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AFD가 집행하는 총 원조금액의 15%가 농촌개발에 책정되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농업분야 ODA가 집중되었다(53%).

AFD와 함께 MAAF도 프랑스 국제개발협력의 흐름 속에서 농업부분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국제개발협력에서의 MAAF의 역할은 아래의 <표 4>와 같이 다섯 가지로 정의된다. 이러한 MAAF의 역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AAF는 농업외교라는 명

9)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 (프랑스어).

분하에 농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기술협력 및 다자기구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농업 및 식품 기술을 향상과 연계하여 아프리카 및 라틴아프리카 국가들의 민간부문과 제품, 서비스의 무역 촉진을 위한 기술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국제개발협력 체계 내 MAAF의 역할

MAAF의 역할	
1	농업 및 식량안보 관련 개발 정책 담당
2	국제협상에 참여
3	농업정책과 개발정책간의 일관성 달성
4	FAO, 세계은행,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등 국제기구 지원
5	다자기구, 국가기관, NGO, 등에 전문가 파견

자료: MAAF 홈페이지(프랑스어 번역).

MAEE와 MAAF는 큰 틀에서 프랑스의 부처 간 개발협력위원회인 CICID의 전략하에 협력하고 있다. 다만, 2009년 이후 CICID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어, 이후의 두 부처간의 협력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UN이 2014년을 가축농업의 해로 지정하였을 때 MAAF의 장관인 스테판 르 폴(Stéphane Le Foll)과 개발장관인 파스칼 캉팡(Pascal Canfin)이 가족의 해에 기여하고자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를 통해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식량·사회·환경 관련 대응에 동참하며, 가축농업이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정책의 핵심임을 명확히 밝혔다.

4.2. 농업 ODA 연왕

4.2.1. 독일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연왕

2009년 6월 CICID가 프랑스 ODA의 우선순위 지원분야로 교육, 보건, 성장지원, 농업 및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등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동 위원회를 통해 두 개의 중점지역(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지중해)과 두 개의 범주별 국가(신흥국가 및 위기국가)에 대한 개발협력에 집중하기로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농업분야 ODA 전략은 전반적으로 이상의 CICID의 개발협력 전략에 부합하여 수립된다. 다만, 농업분야 ODA를 수행하는 부처에 따라 개별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ODA를 집행하고 있다.

우선 MAD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5개 우선분야를 제시하고 있

다. 1) 농촌지역 내 위기대응 및 예방,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영양실조 퇴치, 2) 식량안보 강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3)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 경쟁력 강화, 4) 제도적 환경개선,¹⁰⁾ 5) 교육 및 기술적 기반 강화,¹¹⁾ 등 MAD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우선순위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식량안보를 위한 농촌 및 농가와의 직접적인 협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제도적, 기술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MAAF도 양자협력 우선순위 7가지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ODA를 집행하고 있다. 7가지 우선사항은 제도적 지원, 현지 민간산업부문 지원, 공정무역 촉진, 위생관리, 품질표시를 통한 농산물 및 전통식품 강화,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 보존, 농업연구¹²⁾ 등으로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AF는 농업분야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MAEE의 농업분야 전략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양자 농업 ODA의 양은 2011년 기준 4.2억 달러로 이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규모이다(7%). 전체 프랑스 ODA에서 임업, 수산업, 농촌개발을 포함하는 농업 ODA가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DAC 회원국의 평균 농업 ODA의 비율인 6%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사업별 농업 ODA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전체 농업 ODA 중 농업연구(46%), 농업개발(16%), 수자원(12%) 분야의 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원조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보다 많은 편이나, 농업개발과, 수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프랑스 양자원조의 주요 수원국은 베트남, 마다가스카르, 마요트, 브라질, 부르키나파소로,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농업 ODA의 주요 수원국이 프랑스의 구식 민지인 프랑스어권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4.2.2. 농업분야 ODA 주요 사업

앞서 설명하였듯이, MAD는 프랑스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집행에도 관여하고 있다. 집행방식에 있어 직접적인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수행보다는 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ODA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분야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2008년에 프랑스가 제안한 '식량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0) 제도적 역량 배양·경제·환경·농업 정책간의 조정 강화 지원

11) MAD 홈페이지 (프랑스어 번역).

12) MAAF 홈페이지 (프랑스어 번역).

2008년 6월 프랑스 대통령이 2007년-2008년 식량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 가지 축(거버넌스, 지식, 자금)을 바탕으로 농업,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토지권, 취약계층 보호, 식량안보, 거버넌스 개선, 경제·사회·환경적 생존력, 토지자원 배분의 공정성 등 농업분야의 규율 및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여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식량안보와 농업개발의 지식 축적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위해 MAD를 중심으로 MAAF, 에너지환경지속개발해양부, 경제산업고용부 등 정부부처와 NGO들이 참여하는 '식량안보를 위한 부처 간 그룹'을 설치하여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및 농업개발 등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MAD의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AFD의 경우, MAD로부터 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인계 받아 수원국의 농촌, 농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AFD 내에는 '농업, 농촌개발 및 생물다양성 부서'가 설치되어 농업 농촌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MAD, AFD와는 달리, MAAF는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우선순위로 두고 수원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농업, 농촌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 환경을 위한 프랑스 기금' 과 같이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석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국제 수자원, 토지 황폐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이슈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5. 시사점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각 국의 농업 ODA 체계 및 현황에서 살펴본 바대로, 분석 대상국들은 자국 ODA 전략 및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행위자들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농업 ODA를 시행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사례조사를 통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고 한국 농업 ODA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농업 ODA 시행 부처 및 기관 간 조율 체계 강화

주요 유럽 공여국들이 범정부적으로 국제개발협력력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부처 간 조율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절화가 심각한 한국 ODA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에서는 농업 ODA의 기관 간 조율을 위해 글로벌농림협력추진위

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공유에 그쳐 기관 간 연계 협력이 어려우며 주요 원조전담기관들이 참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현재 상황에 맞는 부처 간 조정 체계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글로벌농림협력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원조전담기관과 농업 ODA 시행주체들 간의 조정을 위해서 주요 유럽공여국들의 경우와 같이 장관급 회의/협력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전담 팀을 각 기관에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5.2. 농업 ODA 정책 및 전략문서 수립

대부분 유럽 공여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농업 ODA를 위한 정책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정책문서를 통해 핵심 원칙 및 접근법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농업분야 ODA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범정부차원 혹은 농식품부차원의 농업 ODA 정책 혹은 전략 문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에도 농업 ODA에 대한 한국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기본 접근법과 원칙을 정리하고, 중점협력을 위한 세부분야를 명시한 농업 ODA 정책·전략 문서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2013년 8월에 마련된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 발전 방안: 농림분야 ODA 중심으로>, 2012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의 <농림수산분야 ODA 통합평가 결과> 및 2012년 9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된 <한국형 ODA 모델> 중 <농업/농촌분야의 한국형 ODA 프로그램>을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범정부 차원의 농업 ODA 정책/전략의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한국의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와 세부 프로그램, 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 농업 ODA 정책/전략 문서가 마련된 후에는 각 수원국별 범정부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과의 연동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5.3. 농업 ODA 세부분야 목록화 및 선택과 집중 시행

앞서 살펴본 영국, 독일, 프랑스 경우, 농업 ODA를 식량원조, 농업개발, 농촌개발, 농업연구, 농업정책, 농업용 수자원 개발, 인적역량강화, 산림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 그중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해당 중점지원분야에 따른

사업 선정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각 시행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이니셔티브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해왔다. 농식품부 안에서도 농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을 통한 자체 사업, 농진청의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산림청의 AFoCO 협력사업, 농촌경제연구원의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정책 컨설팅사업(KAPEX) 사업, 다자기구와의 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 분야 내에서 세부 분야¹³⁾에 근거한 구분이 아닌 추진 주체(기관)에 따라 사업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개도국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발성과(Development Outcome)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분산화된 지원보다는 각 세부분야별 맞춤형 접근법·전략의 마련을 통한 통합 지원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 ODA의 세부분야를 목록화하고 그중 어떤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를 설정한 후, 각 중점지원 세부분야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원조 시행기관 간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5.4. 가치사슬을 고려한 통합적 농업 ODA 사업 추진

농업/농촌 분야 ODA의 경우 실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식품의 가공, 처리, 판매는 물론이고 가계소득 증대,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 고용창출, 무역확대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바, 이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대로 기관별 분절적인 농업 ODA 추진으로 인해 각 기관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은 가치사슬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지원을 단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총리실 <농림수산분야 ODA 통합평가 결과(2012)>에서도 농림분야 특성상 가치사슬 전체 단계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효과적이나, 현재까지는 전체 가치사슬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단계 지원에 치중한 사업 추진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농업 분야의 가치사슬을 완성하기 위한 한국 정부 내의 고용정책, 산업정책, 무역정책 등과의 정책일관성도 고려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의 농업 ODA가 수원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가치사슬과 정책 일관성을 고려한 통합적 프로그램형 사업지원이 시급하다.

13) 예: 식량원조, 농업개발, 농촌개발, 농업연구, 농업정책, 농업용 수자원 개발, 인적역량강화, 산림개발 등.

5.5. 농업분야 부처 및 기관의 전문성·특징을 살린 ODA에 집중

대부분의 유럽 공여국의 경우, 원조전담기관이 전반적으로 ODA를 총괄하되, 농식품부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의 자체 농업·농촌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동연구나 기술협력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분야 ODA 주체들의 경우, 일반적 농촌 개발 ODA 사업이 아닌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살린 콘텐츠 기반으로 향후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농업 ODA 정책·전략 문서의 개발 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중점지원 세부분야를 선정하고, 산업 측면에서의 농업발전, 기술협력 측면에서 R&D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농업기술 전파 등의 농업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농업분야 중점지원 세부분야 선정 이후, 각 세부분야별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KOICA 등의 원조전담기관과 농식품부의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또한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현재 각 기관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의 특성을 살리면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

예를 들어 양자협력형이면서 현지 상주형인 농진청의 KOPIA 센터 사업의 경우 각 수원국별 농업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 결과를 농경연의 KAPEX 프로그램 등의 시행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농업분야 R&D 및 정책 ODA 사업으로서의 농진청과 농경연 사업의 전문성을 상호 심화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농촌공사 등을 통한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ODA 측면보다는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특성을 살리고 무역이나 고용 문제와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6. 사회·경제적 문제와 연결된 농업 ODA 기획

유럽 공여국들의 경우, 농업 ODA의 범주를 단순히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아가 기후변화, 천연자원 관리, 양성평등, 농촌지역 종합개발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확대하여 인식하여 농업 ODA를 시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더 이상 농업은 농업분야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직결된 이슈로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농업 ODA를 더욱 넓은 범위의 개도국 사회·경제적 문제해결과 연결하여 인식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천연자원 관리, 지역개발, 양성평등 등의 주요 글로벌 이슈와 연결된 농업 ODA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점차 더 증대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율, 박수경. 2011. 최근 선진공여국의 ODA 개혁조치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1년 3월 15일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종섭, 박명호, 이영섭, 김종범, 박선희, 정재원, 이은석, 김희연. 2012.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농림수산물교역문화정보원. 2013a. 「EPIS Research: 영국 농업 ODA 현황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물교역문화정보원. 2013b. 「EPIS Research: 독일 농업 ODA 현황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물교역문화정보원. 2013c. 「EPIS Research: 프랑스 농업 ODA 현황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송유철, 임정빈. 2012. 「주요분야별 개발협력방안- 농업분야 개발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상협. 2011. 영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연구: 영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 「아태연구」 제18권 제2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윤수재, 이광희, 홍재환. 2008.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 한국행정연구원.
- 이태주, 홍문숙, 강하니. 2011. 「선진 공여국 원조체계 개편동향연구」. 외교통상부.
- 이태주, 김현정, 강하니, 권현진, 장재현. 2013. 「CPS 성과관리를 위한 국별평가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임정빈, 양태진, 김현정, 강하니, 봉소운. 2012. 「개발도상국 농업기술협력사업의 성과 지표 개발과 평가 연구」. 농촌진흥청.
- 양태진, 김현정, 강하니, 오연주. 2013. 「KOPIA 베트남, 우즈베크 센터의 농업기술협력사업 평가」. 농촌진흥청.
- 홍문숙, 이태주, 김형식, 유성상, 오수현, 백유진, 이성훈. 2013. 「타 해외 원조기관 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체계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Dirk Niebel, Gudrun Kopp, and Hans-Jurgen Beerfeltz. 2013.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 BMZ. OECD/DAC. 2013. Peer Review: France. OECD/DAC.

OECD/DAC. 2010. Peer Review: The United Kingdom. OECD/DAC.

OECD/DAC. 2010. Peer Review: Germany. OECD/DAC.

참고사이트

독일 연방경제협력부 (www.bmz.de/en)

프랑스 외무부(MAD) (www.diplomatie.gouv.fr/en)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MAAF) (www.agriculture.gouv.fr)